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ISSN 2093-311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http://iit.kita.net)



# TRADE FOCUS

2017년 22호

## 미국과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대응

2017년 6월

통상연구실 곽동철 연구원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 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 CONTENTS

[요 약]	i
I. 우회덤핑의 개념과 현황	1
II. 우회덤핑 방지규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3
III. 미국의 우회덤핑 방지규정	4
1. 미국 국내법 상 우회덤핑의 유형	
2. 미국 국내법 상 우회덤핑의 요건	
IV.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	10
1. EU 국내법 상 우회덤핑의 정의 및 적용 범위	
2. EU 국내법 상 우회덤핑의 요건	
V. 결론 및 시사점	18

보고서 내용 문의처

통상연구실 광 동 철 연구원 (☎ 02-6000-5351, kwakie@kita.net)



우회덤핑이란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제품의 생산·선적방법을 변경하여 기존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국내법에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도입하여 우회 수입된 제품 또는 그 구성부품에 기존 반덤핑 관세를 소급적용한다.

그러나 글로벌가치사슬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작금의 세계경제환경 하에서 국제 경영전략의 일환인 해외 생산기지 이전 전략과 우회덤핑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우회덤핑 방지규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글로벌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리 수출업체의 피해가 예상된다. WTO 협정에는 우회덤핑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여 우회덤핑 방지규정의 다자규범 합치성 여부는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분석하고 관련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국의 우회덤핑 방지규정 상 우회덤핑은 ① 수입국 우회, ② 제3국 우회, ③ 사소한 변경이 가해진 제품, ④ 추후 개발된 제품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마다 고유의 법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요건이 충족된 경우 기존 반덤핑관세 조치가 우회덤핑된 제품 및 그 구성부품에 확대 적용된다.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은 모든 우회덤핑 유형에 해당하는 공통요건과 EU 역내외에서 단순조립이 이루어지는 우회덤핑에 관한 특별요건으로 구분된다. 우회덤핑 요건이 충족되면 기존 반덤핑관세 조치가 제3국에서 수입되는 동종제품 또는 기존 반덤핑관세 대상국에서 수입되는 유사 제품 및 그 구성부품에 확대 적용된다.

다자통상규범이 부재한 상태에서 우회덤핑 방지규정이 일방적으로 적용될 경우 보호주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다자규범화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계의 입장에서는 주력수출상품을 고급화하여 보호주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도 국내법상 우회덤핑 방지규정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기존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우회덤핑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무역구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분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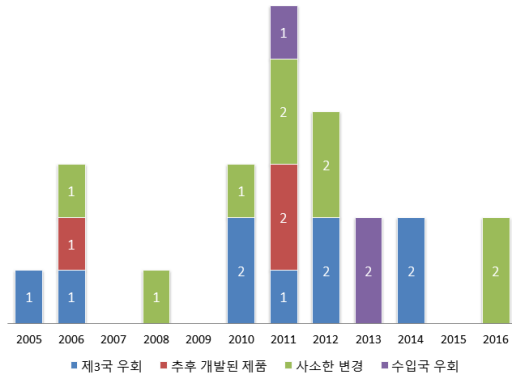


## I. 우회덤핑의 개념과 현황

- 우회덤핑(circumvention dumping)이란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제품의 생산 및 선적방법을 변경하여 기존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함
  - 우회덤핑이 이루어지면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무력화되므로 주요국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에 우회덤핑 방지 규정을 도입함
  - 수출국의 행위가 우회덤핑행위로 인정되면 우회 수입된 제품 또는 그 구성 부품에 기존의 반덤핑관세가 확정되어 소급적용됨
  - 피터 나바로 美 국가무역위원회 의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생산 기지를 베트남 등지로 이전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행태를 ‘무역 부정행위 (trade cheating)’라고 비난한바, 이러한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우회덤핑행위에 해당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GATT 1994 제VI조 및 WTO 반덤핑협정에는 우회덤핑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지만 일부 국가는 자국법에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도입함
  - 미국과 EU를 포함한 33개 국가가 자국법에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도입하여 우회덤핑이 이루어진 상품에까지 기존의 반덤핑조치를 확대 적용하고 있음<sup>1)</sup>
    - \* 우리나라는 ‘관세법 시행규칙’,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서 원산지를 위장한 국내 수입상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우회덤핑을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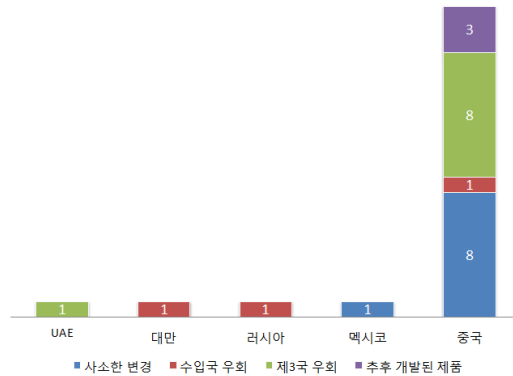
1) Kreier et al.(2016), “Anti-Circumvention in the Multilateral System: Plus ça Change”, *Global Trade and Customs Law*.

<유형별 미국의 우회덤핑조사개시 건수 (2005년~2016년 상반기)>



출처 : WTO 및 US GPO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대상국가별 미국의 우회덤핑조사개시 건수 (2005년~2016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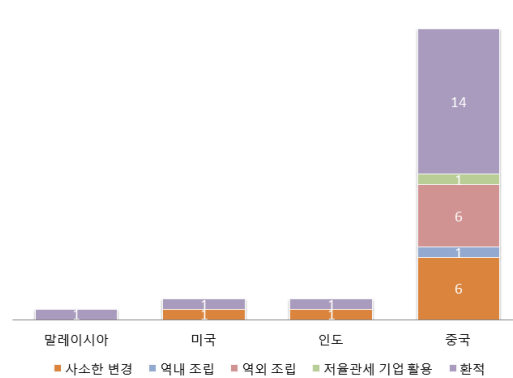
출처 : WTO 및 US GPO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유형별 EU의 우회덤핑조사개시 건수 (2005년~2016년 상반기)>



주1 : 동일한 원심조치에 대해 중복된 우회덤핑조사는 1건으로 집계  
 주2 : 동일한 원심조치에 대해 두가지 유형의 우회덤핑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개별적으로 집계  
 출처 : WTO 및 EU Commission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대상국가별 EU의 우회덤핑조사개시 건수 (2005년~2016년 상반기)>



주1 : 동일한 원심조치에 대해 중복된 우회덤핑조사는 1건으로 집계  
 주2 : 동일한 원심조치에 대해 두가지 유형의 우회덤핑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개별적으로 집계  
 출처 : WTO 및 EU Commission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WTO 차원에서는 우회덤핑에 관한 명시적 규범이 부재하여 미국 및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이 WTO 규범 위반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음
-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시장에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반덤핑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간 구분이 불분명함
  - 경영전략 차원에서 글로벌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리 기업들이 수입국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상존함
- 이에 동 보고서는 주요국인 미국과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분석하고 관련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여 우리의 대응전략을 개발하고자 함

## II. 우회덤핑 방지규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 1980년대 중반 일본과 EC 간 일명 ‘스크루드라이버 사건’으로 우회덤핑 논의가 촉발되었으며 이후 EC와 미국은 기존 반덤핑조치의 효과를 유지하고자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도입함

● 일본 기업이 EC 역내에 스크루드라이버만으로도 생산이 가능한 단순조립 공정을 세워 기존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품들을 수입하여 조립·판매 하자 EC는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도입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함

● 해당 EC 규정이 GATT 패널에 의해 내국민대우 위반으로 판정<sup>2)</sup>된 이후, EC는 동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영향으로 미국도 유사한 우회덤핑 방지 규정을 도입함

- EC는 1987년 처음으로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도입하였으나 개정을 거쳐 현재 ‘이사회 규정 2016/1036’의 제13조에서 우회덤핑행위를 규제함

- 미국은 현재 ‘개정 1930년 관세법’ 제781조와 ‘상무부규칙’ 제391.225조에서 우회덤핑행위를 규율함

■ WTO 차원에서도 우회덤핑행위 방지를 위한 다자규범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각국의 의견 차이로 인해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참고】 현재 WTO 도하라운드에서 논의 중인 우회덤핑의 유형<sup>3)</sup>

- ① (부품과 구성요소의 수입) 부품 및 구성요소를 기존 반덤핑 조치 부과국 내로 수입하여 조립·완성하는 행위
- ② (제3국에서의 조립) 부품 및 구성요소를 제3국으로 수출, 조립·완성하여 기존 반덤핑 조치 부과국으로 수출하는 행위
- ③ (사소하게 변경된 제품) 사소하게 변경된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

2) EEC-Regulation on Imports of Parts and Components (L/6657-37S-132).

3) ‘반덤핑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관한 의장 초안’, 제9조 bis, (TN/RL/W/213).

### Ⅲ. 미국의 우회덤핑 방지규정

#### 1. 미국 국내법 상 우회덤핑의 유형

- 미국의 우회덤핑 방지규정<sup>4)</sup> 상 우회덤핑은 ① 수입국 우회(importing country circumvention), ② 제3국 우회(third country circumvention), ③ 사소한 변경이 가해진 제품(slightly altered products), ④ 추후 개발된 제품(later developed products)으로 구분됨

#### 2. 미국 국내법 상 우회덤핑의 요건

##### (1) 수입국 우회(importing country circumvention)<sup>5)</sup>

- 수출국이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제품의 구성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이를 현지에서 조립·완성하여 반덤핑조치를 회피하려는 경우 기존 반덤핑조치가 제품의 구성부품 또는 구성요소에 확대 적용됨
- ▲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기존 반덤핑관세의 대상이 되는 제품과 동종 제품이어야 하며, ▲ 반덤핑관세 조치의 적용을 받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부품으로 조립·완성되어야 하며, ▲ 미국에서의 조립·완성공정이 중요치 않거나 사소해야 하며, ▲ 반덤핑관세 조치의 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된 부품의 가치가 제품의 전체 가치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경우 우회덤핑으로 판정됨

4) 개정 1930년 관세법 제781조와 미 상무부규칙 제391,225조.

5) 개정 1930년 관세법 제781조(a).

## <수입국 우회 사례>

### 【 이탈리아산 파스타 사례\* 】

(사실관계) 5파운드 이하 무게로 소형 포장된 이탈리아산 파스타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자 미국 현지 업체는 대형 포장된 이탈리아산 파스타를 수입한 후 5파운드 이하로 재포장하여 미국시장에 판매함. 美 상무부는 기존의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탈리아산 대형 포장 파스타가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우회덤핑조사를 개시하였고 긍정적인 최종판정을 내림.

(법적쟁점) 피제소업체는 △ 대형 포장 파스타를 우회덤핑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존 반덤핑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며, △ 대형 포장 파스타는 완제품이고 우회덤핑 요건인 부품 또는 구성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함. 이에 상무부는 △ 재포장을 위해 수입된 것이 아닌 소비목적의 다른 대형 포장 파스타는 반덤핑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반덤핑명령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며, △ 포장은 수입파스타 중 소매판매용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포장되는 대형 포장 파스타는 우회덤핑 요건인 부품 또는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시사점) 미국 내에서 재포장만을 거치는 경우 이는 사소한 조립·완성공정에 해당하며 그 구성요소는 기존 반덤핑조치 대상제품의 수입으로 간주됨. 미국 현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였다도 우회덤핑의 적용을 자동적으로 면제받는 것은 아님. 우리 기업이 한국산 부품을 조달받아 미국 현지에서 조립·완성하는 경우 사소한 공정에 해당하여 우회덤핑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63 FR 54672, Anti-Circumvention Inquiry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on Certain Pasta from Italy :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October 13, 1998)

## (2) 제3국 우회(third country circumvention)<sup>6)</sup>

-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인 제품의 구성부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고 조립·완성하여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와 부품이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인 경우 제3국으로 이를 수출하고 조립 후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여 반덤핑관세명령을 회피하는 경우 제3국 우회에 해당됨
- ▲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반덤핑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생산하는 동종 제품이어야 하며, ▲ 미국으로 수입되기 전에 반덤핑관세 적용대상 제품이나 반덤핑관세 적용대상 국가의 제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조립·완성되어야 하며, ▲ 조립·완성 공정이 사소하거나 중요치 않아야 하며, ▲ 반덤핑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생산된 부품의 가치가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의 전체 가치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야 함

6) 개정 1930년 관세법 제781조(b).

- 특히 제3국 우회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부품 또는 구성요소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가 완제품으로까지 확대 적용됨

### <제3국 우회 사례>

#### 【 한국산 컬러TV 사례\* 】

**(사실관계)** 1984년 美 상무부가 한국산 컬러TV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이후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현지에서 미국으로 수출함. 1996년 상무부는 한국기업이 한국산 TV 부품을 사용하여 멕시코 현지에서 조립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기존 반덤핑관세를 회피한다는 제소를 접수하고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함. 그러나 1997년 제소자의 조사중지요청으로 최종판단 없이 조사 종결함.

**(법적쟁점)** 한국은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글로벌 경영전략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함. 이에 상무부는 △ 조사대상물품이 기존 반덤핑관세 적용대상과 동종제품이고, △멕시코에서의 조립·완성은 사소한 정도였으며, △ 완성품 전체 가치 중 한국산 부품의 가치가 상당한 정도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우회덤핑조사를 개시함.

**(시사점)** 피제소업체로서는 제3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기존 반덤핑조치 회피 목적이 아니라 생산비용 절감, 원자재 조달, 소비시장 접근 등을 위한 글로벌 경영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함.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와 제3국으로 동반진출하여 부품의 현지생산 비중을 늘리는 해외투자전략을 검토할 필요 있음.

#### 【 WTO ‘미국-한국산 컬러TV’ 분쟁사건\*\* 】

1997년 우리 정부는 상무부의 우회덤핑조사가 GATT 1994 제6조 및 반덤핑협정 제1조\*\*\*를 위반하였다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함. 동 사건은 WTO 출범 이후 우리 정부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첫 통상분쟁이자 현재까지 우회덤핑에 관한 유일한 WTO 분쟁사건임. 그러나 美 상무부가 우회덤핑 조사를 중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패널 설치 요구를 철회하여 우회덤핑 방지규정의 WTO 협정 합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함.

\* 61 FR 1399, Color Television Receiv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y on Antidumping Duty Order(January 19, 1996)

\*\* United States -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olour Television Receivers(DS89)

\*\*\* WTO 반덤핑협정 제1조. “반덤핑조치는 오직 1994년 GATT 제6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시되고 수행된 조사에 따라서만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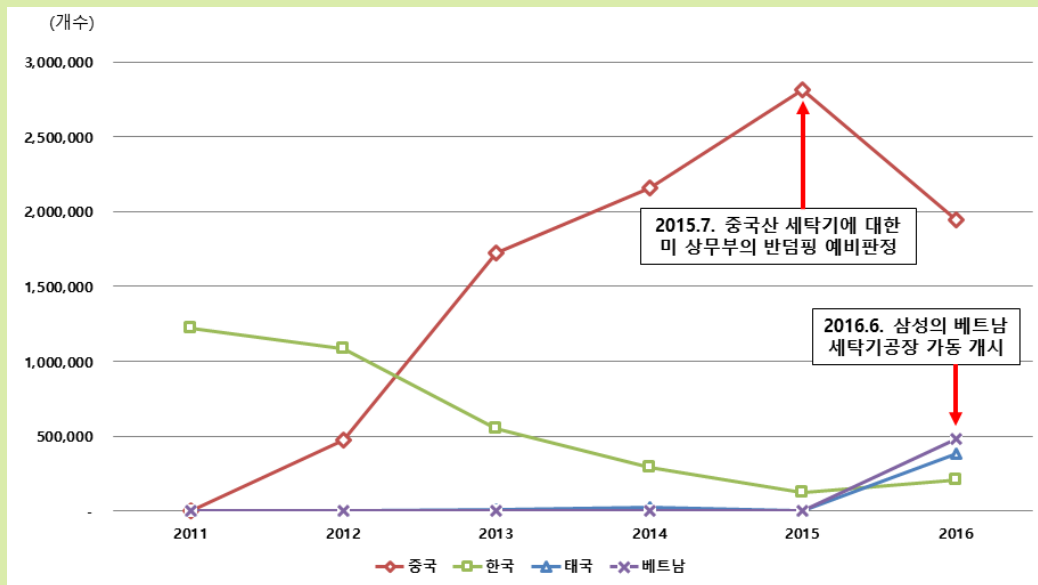
### 【 참고 】 삼성전자·LG전자의 세탁기 생산기지 이전과 우회덤핑 논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수출용 세탁기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 및 태국으로 이전시킨 행위에 대해 피터 나바로 NTC 의장이 “무역 사기행위(trade cheating)”라고 비난하며 수입규제 조치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7년 1월 중국산 세탁기에 확정반덤핑관세가 부과되자 생산기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반덤핑조치를 무력화했다는 주장이다. 美 상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된 바 없으나 향후 실제로 상무부의 조사가 개시된다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행위가 우회덤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법에 규정된 네 가지 우회덤핑 유형 중 ‘제3국 우회(third country circumvention)’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베트남 및 태국에서의 공정이 사소한 조립·완성 공정에 불과한지가 중요하다. 제3국 우회의 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확정되기 이전인 2016년부터 중국 내 완제품 생산공정 전체를 동남아로 이전하여 미국판매용 세탁기를 생산했기 때문에 우회덤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료 : 각종 언론보도

<미 상무부 반덤핑관세 조치의 대상품목인 가정용 세탁기의 수입국별 수입물량 추이 (2011년~2016년)>



주 : HTSUS 8450.20.0090, 8450.20.0040, 8450.20.0080 기준  
 자료 : 미국 무역위원회(US ITC)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3) 사소한 변경이 가해진 제품(slightly altered products)<sup>7)</sup>

#### ■ 기존 반덤핑관세 적용대상제품의 외관 또는 형태를 미세하게 변경하여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려는 경우 우회덤핑으로 간주함

- 상무부는 ▲ 전반적인 물리적 성질, ▲ 최종구매자의 기대, ▲ 최종용도, ▲ 거래 및 광고경로, ▲ 제품의 전체 가치 대비 변경비용 등을 고려하여 우회덤핑 여부를 판단함

- 상기 요건은 미국의 일반적 반덤핑조사 과정에서 동종물품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과 매우 유사함

<사소한 변경이 가해진 제품 사례>

#### 【 멕시코산 탄소합금강선재 사례\* 】

(사실관계) 2011년 6월 美 상무부는 지름이 4.75mm~5.00mm인 멕시코산 선재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는 지름 5.00mm 이상인 멕시코산 선재에 부과된 기존 반덤핑관세 조치를 회피하려는 우회덤핑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개시함

(법적쟁점) 상무부는 전반적인 물리적 성질을 고려한 결과 지름 4.75mm~5.00mm 선재와 기존 선재 간에 의미있는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조사대상인 선재와 기존 선재 간 0.25mm 지름 차이로 최종구매자의 기대, 최종용도, 광고경로 등이 의미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또한 기존보다 지름이 0.25mm 작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비용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존 반덤핑부과대상(지름 5.00mm 이상)과 우회덤핑 조사대상(지름 4.75mm~5.00mm)을 동종 제품으로 간주하여 우회덤핑으로 판정함.

(시사점) 상기 유형에 대한 우회덤핑 판정은 기존 반덤핑관세 부과대상과의 동종성 여부가 주요 쟁점임. 피제소기업 입장에서는 원심 반덤핑조사과정의 동종성 판단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에 대비해야 함.

\* 77 FR 59892, Carbon and Certain Alloy Steel Wire Rod From Mexico :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October 1, 2012)

7) 개정 1930년 관세법 제781조(c).



#### (4) 추후 개발된 제품(later developed products)<sup>8)</sup>

■ 반덤핑조사가 개시된 이후 개발된 제품도 기존 반덤핑조치 대상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우회덤핑으로 간주됨

- 상무부는 추후 개발된 제품의 ▲ 물리적 성질, ▲ 최종구매자의 기대, ▲ 최종 용도, ▲ 유통경로, ▲ 광고 및 진열방식을 고려해야 함

##### <추후 개발된 제품 사례>

###### 【 중국산 적층 직포 포장지 사례\* 】

(사실관계) 2008년 美 상무부는 세 가지 염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중국산 적층 직포 포장지에 64.28% ~ 91.7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이후 두 가지 염료와 스크리닝 인쇄공정(screening - process)을 사용하여 기존과 유사하게 제작된 포장지가 중국에서 수입되자 제조자는 이를 추후 개발된 제품으로 간주하여 상무부에 우회덤핑조사를 요청함.

(법적쟁점) 제조자 측은 피제조기업이 원심 판정 이후 스크리닝 인쇄공정을 변형하여 두 가지 염료만을 사용하여 다양한 색상의 그림이 삽입된 포장지를 제작·수출하였으며 이는 우회덤핑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이에 美 상무부는 스크리닝 인쇄공정으로 제작된 포장지가 정상 가격 조사 개시 시점에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추후 개발된 제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우회덤핑이 아니라고 판정함.

(시사점) 추후 개발된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이 기존 반덤핑조사 개시 시점에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피제조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이 이미 상업적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함.

\* 78 FR 12716, Laminated Woven Sack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Neg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February 25, 2013)

8) 개정 1930년 관세법 제781조(d).

## IV.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

### 1. EU 국내법 상 우회덤핑의 정의 및 적용 범위

- EU 반덤핑규정 제13조 제1항<sup>9)</sup>은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형태의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우회덤핑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함
  - ▲ 관세부과 이외의 적절한 사유 또는 경제적 타당성이 불충분하고, ▲ 피해의 증거가 존재하거나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가 훼손되고, ▲ 덤핑이 존재하는 ▲ 관행(practice), 공정(process) 또는 작업(work)으로 인하여 ▲ 교역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 ‘관행(practice), 공정(process) 또는 작업(work)’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제품의 사소한 변경(slightly changed products), 단순 환적(transshipment), 낮은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기업을 통한 수출(shipping through exporter with lower rate), EU나 제3국에서의 조립(importing or third country assembly) 등이 해당함
- 우회덤핑으로 판정되면 제3국에서 수입되는 동종 상품이나 그 부품 또는 특정 기업으로부터의 수입에도 기존 반덤핑조치가 확대 적용됨
  -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종 상품 또는 사소한 변경만이 가해진 기존 상품이나 그 구성부품에 기존의 반덤핑조치가 확대 적용됨
  - 개별 반덤핑관세율의 혜택을 받는 기업으로부터의 수입에도 기존의 반덤핑조치가 확대 적용됨

9) EU 반덤핑규정 제13조(Regulation (EU) 2016/103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codification), as published in OJ L176/21 (2016)).

## 2. EU 국내법 상 우회덤핑의 요건

- 다양한 유형의 우회덤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sup>10)</sup>과 EU 역내 또는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공정에 대한 특별 요건<sup>11)</sup>으로 구분됨

### (1) 공통요건

#### 1) 교역 형태의 변화

- 공통 요건으로서 제3국과 EU 간 또는 반덤핑조치대상국 내 개별 기업과 EU 간 교역 형태의 변화가 발생해야 함

- 이는 조치대상제품의 수입이 감소하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조치대상 제품이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종제품으로 대체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함
- 기존 조치대상제품의 수입 감소와 대체제품의 수출 증가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체제품의 수입이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정황만으로도 충분함

#### <교역 형태의 변화 사례>

##### 【 중국산 신발류 사례\* 】

(사실관계) 2006년 중국산 신발류에 반덤핑조치가 부과된 이후 동일제품이 마카오에서 원심 조사 시의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됨. EU 집행위는 기존 조치를 우회할 목적으로 교역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조사를 개시함.

(법적 쟁점) EU 집행위는 반덤핑조치 부과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마카오로부터의 동종제품 수입이 급증하였고 마카오의 중국산 신발류 수입이 증가한 추세를 근거로 교역 형태의 변화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이러한 교역 형태의 변화는 정당한 경제적 이유 없이 환적 및 조립공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짓고 기존 반덤핑조치를 마카오산 제품에 확대 적용함.

(시사점) 조사대상업체의 협조가 없을 경우 EU 집행위는 교역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단순히 수출입 통계정보에 기반하여 판단할 수 있음. 업체의 입장에서는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역 형태가 변화된 정당한 경제적 이유나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함.

\* Footwear with leather uppers from China(2008) OJ L117/1

10) EU 반덤핑규정 제13조 제1항.

11) EU 반덤핑규정 제13조 제2항.

## 2) 관행, 공정 또는 작업

### ■ 교역 형태의 변화가 예시적으로 아래 나열된 어느 하나 이상의 관행, 공정 또는 작업으로 인한 것이어야 함

- (제품의 사소한 변경) 제품의 핵심적인 특성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원심조치와 다른 세번을 적용받기 위해 제품을 사소하게 변경하는 행위

- 단순 절단 작업<sup>12)</sup>이나 혼합물<sup>13)</sup>이 이에 해당함

#### <제품의 사소한 변경 사례>

##### 【 벨라루스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사례\* 】

(사실관계)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PSF)를 EC로 수출하는 벨라루스 업체는 1996년 PSF에 반덤핑조치가 부과되자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토우(PFT)를 EC 내로 수입하여 PSF로 가공함. EC의 PSF 생산단체는 이로 인해 벨라루스산 PSF에 부과된 기존 반덤핑조치가 우회되고 있다며 EC 집행위에 우회덤핑조사를 요청함.

(법적 쟁점) PFT가 EC 내로 수입되어 단순한 절단 공정만을 거쳐 PSF로 가공되는 경우, 벨라루스산 PSF에 부과된 기존의 반덤핑조치가 우회되는지 여부가 쟁점임. EC 집행위는 PSF와 PFT 간 차이는 사소한 것으로 PSF에 부과된 기존 반덤핑조치가 PFT에 연장될 수 있다고 판단함.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며 단순 절단 가공은 제품에 사소한 변경이 가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임.

(시사점) 조립공정이 아닌 절단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제품 간 동일성이 유지되고 기존 반덤핑조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

\* Polyester staple fibre from Belarus(1997) OJ L346/1

- (환적) 우회덤핑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조치대상제품을 제3국산으로 둔갑시켜 EU 역내로 운송하는 행위

12) 벨라루스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사건(Polyester staple fibre from Belarus(1997) OJ L346/1).

13) 중국산 산화아연 사건(Zinc oxides from China(2003) OJ L232/1).

## <환적 사례>

### 【 중국산 철강 로프 및 케이블 사건\* 】

(사실관계) 2005년 EU 집행위는 중국산 철강 로프 및 케이블(SWR)에 60.4%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2009년 제소자는 중국에서 생산된 해당제품이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환적되어 EU로 수입되는 등 심각한 교역 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회덤핑 조사를 요청함.

(법적 쟁점) 기존에 부과된 반덤핑조치의 효과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중국산 SWR이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환적되어 EU로 수입되었는지가 쟁점임. 조사기간 중 한국의 수출용 SWR 생산규모가 EU향 총수출량에 미치지 못하며 한국의 조사당국 역시 중국산 수입 SWR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발표한 사실을 근거로 EU 집행위는 중국산 SWR가 한국에서 환적되었다고 판단함. 반면,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우회덤핑 조사에 적극 협조한 업체의 수출량 증가에 의한 것이므로 중국산 SWR가 말레이시아에서 환적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결국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었던 원심 반덤핑조치가 한국에서 수입된 제품에도 확대 적용된 반면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우회덤핑 조사는 종료됨.

(시사점) 우회덤핑 조사과정에서도 “입수가능 정보(facts available)”가 적용되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함. 업체로서는 조사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고 해당 제품의 원산지도 철저히 관리해야 함.

\* Steel ropes and cables from China(2010) OJ L117/1

- (낮은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기업을 통한 수출) 원심에서 낮은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기업을 통해 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로 브랜드 가치가 중요치 않은 벌크(bulk)제품이 해당됨
- (EU나 제3국에서의 조립) 후술하는 EU 반덤핑규정 제13조 제2항의 특별요건의 적용을 받음

### 3) 관세부과 이외의 적절한 사유 또는 경제적 타당성의 불충분

■ 관행, 공정 또는 작업이 변화한 근거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이외에 달리 적절한 사유나 경제적 타당성을 찾을 수 없어야 함

- 제품의 변경이나 EU 역내에서의 단순 절단작업 등이 경제적 이익이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함<sup>14)</sup>
- EU 역내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부품을 수입하여 EU 역내에서 조립·생산하여 얻는 이익이 크다면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함<sup>15)</sup>

<관세부과 이외의 적절한 사유 또는 경제적 타당성의 불충분 사례>

#### 【 중국산 링 바인더 메커니즘 사건\* 】

(사실관계) EC 집행위는 2000년 중국산 링 바인더 메커니즘(RBM)에 51.2~78.8%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함. 이후 중국산 RBM 제조업자는 베트남에 조립공정을 설립하고 생산된 RBM 전량을 EU로 수출함. 이에 제조사는 베트남에서 조립·수출된 해당 제품이 기존 반덤핑조치를 우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회덤핑 조사를 요청함.

(법적 쟁점) 베트남 수출업자는 베트남정부의 투자유인정책, 저렴한 임금, EU의 특수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에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기지를 세웠고 전량을 EU로 수출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EU 집행위는 베트남정부의 투자유인정책이 베트남 생산기지 건설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납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총 생산비용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EU의 시장상황이 특수하다는 근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EU, 중국 및 베트남 간에 발생한 교역 형태의 변화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단순 조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중국산 RBM에 대한 반덤핑조치 이외에 이를 정당화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타당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시사점) 기업의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투자환경, 생산비용, 시장상황 등 경제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진 결정이라면 우회덤핑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음. 피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생산기지 이전의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함.

\* Certain ring binder mechanisms from China(2004) OJ L232/1

14) Certain ring binder mechanisms from China(2004) OJ L232/1.

15) Graphite electrode systems from India(2007) OJ L277/18.

#### 4)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 훼손

##### ■ 가격 또는 수량의 측면에서 기존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가 훼손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 EU 반덤핑규정 제13조 1항은 가격 ‘또는’ 수량 측면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상 EU 집행위원회는 가격과 수량을 ‘모두’ 검토함
- 원심에서의 피해분석(injury test)과 유사하지만 원심 수준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진행됨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 훼손 사례>

##### 【 중국산 링 바인더 메커니즘 사건\* 】

(법적 쟁점) 베트남 수출자는 해당 수입품이 EU 생산자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EU 집행위가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또한 원심 판정 이후 수입시장에서 발생한 경쟁적 조건의 변화 양상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함. 그러나 EU 집행위는 이러한 조사절차가 EU 반덤핑규정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의 급격한 증가와 낮은 수출가격을 고려하였을 때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원심조치의 구제효과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함.

(시사점) EU 집행위는 기존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 훼손 판단시 수량과 가격을 모두 고려함. 따라서 피제소업체로서는 양 요소 모두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해야 함.

\* Certain ring binder mechanisms from China(2004) OJ L232/1

#### 5) 덤핑의 존재

##### ■ 원심에서 확립된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의 증거가 존재해야 함

- 우회덤핑 조사 단계에서 파악된 수출가격이 원심에서 확립된 정상가격 또는 가장 최근의 재심사에서 확립된 정상가격 이하이면 덤핑이 존재함
- 우회덤핑 조사 단계에서 발견된 덤핑마진이 원심 덤핑마진과 동일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EU 집행위는 실무적으로 덤핑마진이 ‘상당한(significant)’ 정도인지 고려함<sup>16)</sup>

16) Hand pallet trucks and their essential parts from China(2009) OJ L151/1.

## (2) EU 역내 또는 제3국에서의 조립공정에 관한 특별요건

■ EU 역내 또는 제3국에서 조립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13조 제2항의 특별규정이 적용되며 하기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원심 조치를 우회한 것으로 판정됨

- ① 원심 조사개시 전후로 조립공정이 개시되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가동되어야 하며, ② 조치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된 부품의 가치가 총 부품 가치의 60% 이상이고(부품가치 요건), ③ EU 또는 제3국 내 조립 공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25% 미만이어야 하며(부가가치 요건), ④ 조립된 제품에 의해 기존 반덤핑관세의 무역구제 효과가 훼손되고 있어야 하며, ⑤ 기존 조치대상제품의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이 존재해야 함

- 조립공정을 수행하는 생산자가 원심 조치의 대상기업과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원심 조치대상국에서 수입된 부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회덤핑 요건에 해당함

- 부품가치 요건과 관련하여 수입된 부품의 가치 계산에는 운송비, 관세, 통관 비용 등(단 포장비는 제외)을 포함한 1년 동안의 부품구입가격이 사용되고 총 부품의 가치 계산에는 제조간접비(manufacturing overheads), 판매 관리비, 영업이익 등은 제외됨<sup>17)</sup>

- 부가가치 요건은 매우 엄격히 적용되며 직간접 임금과 제조간접비를 포함한 부가가치(현지조달부품, 일반관리비, 이익 등은 제외)가 총 생산비용의 25% 이상일 경우에만 우회덤핑 혐의를 피할 수 있음<sup>18)</sup>

17) Certain retail electronic weighing scales from Japan, Singapore(1997) OJ L141/57과 Certain magnetic disks (3.5' microdisks) from Japan, Taiwan, China(1996) OJ L186/14).

18) Certain retail electronic weighing scales from Japan, Singapore(1997) OJ L141/57.



### 【 EU 역내에서 조립 시 부가가치 요건 예외 예시 】

내용	금액	비고
원심 조치대상부과국산 수입부품	65	원심 조치부과대상국에서 수입된 부품의 가치가 60% 이상으로 부품 가치 요건을 충족하지만 EU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25% 이상 이므로 우회덤핑에서 제외됨
제3국산 수입부품	35	
총 부품수입가격	100	
EU 역내 제조비용(역내산 부품가격 및 역내에서 발생한 총 제조비용)	50	
총 비용	150	
EU 역내 부가가치	33.3%(=50/150)	

자료 : Stanbrook and Bentley(1996)을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 미국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이 우회덤핑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고유한 요건을 명시한 반면,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은 조립공정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 EU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조립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공정에도 동 규정이 적용됨

## V. 결론 및 시사점

- 다국적기업의 등장과 글로벌가치사슬의 확산으로 기존 반덤핑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우회덤핑에 대한 우려가 커짐
  - 미국과 EU는 독자적인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도입하여 기존 반덤핑조치의 효과를 유지하고자 함
  -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인 생산기지 해외 이전과 반덤핑관세 적용을 회피하려는 우회덤핑 간 구분이 모호한 상황임
- 미국 및 EU의 일방적인 우회덤핑 방지규정이 WTO 다자규범과 합치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WTO 규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각 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입장과 설령 우회덤핑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통상적인 반덤핑조사과정에 따라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존의 반덤핑조치가 확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대립함
-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다자규범화하여 반덤핑조사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 주요국이 보호무역주의 행태를 보임에 따라 우회덤핑 조사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점차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됨
  - 도하라운드에서 진행 중인 우회덤핑 방지규정의 다자규범화 논의를 지속하여 우회덤핑 방지조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함
-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투자전략 입안 시 우회덤핑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외투자 전략을 세우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부품·소재 협력업체와 동반 진출해야 함
  - 해외 생산기지에서 사소한 공정만이 이루어지거나 부가가치 창출이 적을 경우 우회덤핑으로 판정받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주요 생산공정이 현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경영계획에 기반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하고 현지 부가가치 창출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 우리 기업은 프리미엄 전략으로 보호주의 장벽을 넘어야 함

- 불공정 무역행위를 빌미로 한 미국의 보호주의적 조치는 우회덤핑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품을 고급화해야 함
  -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미국의 우회덤핑 조사 사건에서 보듯이 과거 한국산 TV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하여 반덤핑관세의 주요 타겟이었지만 현재는 전세계 프리미엄 TV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 2016년 세계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 : 1위 LG전자(40.8%), 2위 삼성전자(23.4%) (IHS)

### ■ 우리 정부당국은 주요국의 우회덤핑 조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각국의 우회덤핑 규정 입법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우리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 반면 우리 국내산업도 외국기업의 우회덤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증하는 바, 국내법에 우회덤핑 방지규정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함

- 현행 국내규정은 기존 조치대상제품을 우회 수입하는 국내 수입상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원산지 위장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이 없음
- 미국과 EU가 도입한 우회덤핑 방지규정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검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제정할 필요 있음

## 참고자료

- 이재형. “우회덤핑방지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03.
- 전만준. “반덤핑조치 우회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무역구제 2006년 겨울호*. 200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우회덤핑방지제도 비교 연구.” *관세연구 14-04*. 2014.
- Kreier, Jesse, Seref Coskun, and Hiromi Yano. “Anti-Circumvention in the Multilateral System: Plus ça Change.”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11(11)*. 2016.
- Spicer, Margaret, Peggy Clark, and Gary Horlick. “Anti-Circumvention of Anti-Dumping Measures: Law and Practice of the United States.”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11(11)*. 2016.
- Stanbrook, Cleve and Philip Bentley. “*Dumping and Subsidies: The Law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in the European Community*.”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 Vermulst, Edwin. “Circumvention of Anti-Dumping Measures: Law and Practice of the European Union.”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11(11)*. 2016.
- WTO. Semi-annual reports of the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under Article 16.4 of the agreement.
- Yang, Junsok. “Learning by Doing : The Impact of a Trade Remedy Case in Korea.” *Managing the Challenges of WTO Participation 45*. 2005.

## **미국과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대응**

Trade Focus 2017년 22호

발행인 | 김인호

편집인 | 신승관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7년 6월 15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